**특 허 법**

**제1장 총칙**

**제1조**

특허권자의 합법적권인을 보호하고, 발명창조의 이용을 추진하고, 창조능력을 향상하고,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의 발명창조는 발명, 실용 신안 및 디자인을 가리킨다. 발명이란 물품, 방법 또는 그 개량에 대해 제출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가리킨다. 실용 신안이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해 제출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가리킨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그것의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모양의 결합에 대해 작성한 미감이 풍부하고 산업상 이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가리킨다.

**제3조**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은 전국의 특허업무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며, 특허출원의 수리 및 심사를 총괄하며, 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특허업무관리부문은 자기 행정구역 내의 특허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법률, 사회공중도덕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발명창조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원을 획득하거나 이용하였고, 또한 그 유전자원에 의하여 완성된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다.

**제6조**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그 단위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그 단위가 특허권자가 된다.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그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특허권자가 된다.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그 단위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를 출원할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7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 특허출원에 대하여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8조**

2 이상의 단위 또는 개인이 협력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하나의 단위 또는 개인이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의 위임을 받고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완성한 또는 공동으로 완성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속한다.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특허권자가 된다.

**제9조**

동일한 발명창조는 하나의 특허권만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출원인이 같은 날에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해 실용신안 및 특허를 출원하고 먼저 취득한 실용신안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고 또한 출원인이 그 실용신안권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2 이상의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각각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 특허권은 최선 출원인에게 수여한다.

**제10조**

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에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특허행정부문에 등록하여야 하며,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이 이를 공고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수여된 후에는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그 특허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특허 물품을 생산, 사용, 판매 청약, 판매, 수입하거나, 또는 특허방법을 사용하거나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품을 사용, 판매 청약, 판매, 수입해서는 안 된다. 디자인권이 수여된 후에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그 특허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디자인특허 물품을 생산, 판매 청약, 판매, 수입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단위나 개인이 타인의 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특허권자와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허권자에게 특허 실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실시권자는 계약에서 정한 단위나 개인 이외의 자에게 그 특허를 실시하도록 허락할 권리가 없다.

**제13조**

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출원인은 그 발명을 실시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당한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국유기업사업단위의 특허가 국가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의 관련 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비준된 범위 내에서 보급 이용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단위에게 그 특허를 실시하게 허락할 수 있다. 실시료는 실시단위가 국가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지불한다.

**제15조**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공유자가 권리의 행사에 대해 약정하였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만약 약정이 없으면 공유자는 단독으로 실시 또는 통상실시권의 방식으로 타인에게 당해 특허를 실시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타인에게 당해 특허를 실시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수취한 실시료는 공유자가 분배하여 가진다. 전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전체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를 장려하여야 한다. 발명창조특허를 실시한 후에는 보급 이용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이익에 따라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17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특허서류에 자신이 발명자 또는 설계자임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특허권자는 특허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포장에 특허 표시를 명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중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약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19조**

중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한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한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특허대리기구는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위임인의 위임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임인의 발명창조 내용에 대하여 특허출원이 이미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유지의 책임을 진다. 특허대리기구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0조**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완성된 발명창조에 대하여 외국에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먼저 국무원특허행정부문에 비밀유지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비밀유지 심사의 절차, 기간 등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른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 이 법 및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을 처리한다.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에 특허를 출원한 발명 또는 실용 신안에 대해 중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다.

**제21조**

국무원특허행정부문 및 특허복심위원회는 객관•공정•정확•적시의 요구에 맞게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신청 및 청구를 처리하여야 한다.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은 완전•정확•적시에 특허정보를 공개하고 특허공보를 정기적으로 출판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되기 전에는,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의 직원 및 관계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책임을 진다.

**제2장 특허권 수여의 요건**

**제22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발명 및 실용 신안은 신규성, 진보성 및 실용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신규성이란,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이 종래 기술에 속하지 않으며, 또한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이 어떤 단위 또는 개인에 의해 출원일 전에 국무원특허행정부문에 특허출원을 하고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특허출원서류 또는 출원일 이후에 공고된 특허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진보성이란, 종래 기술에 비하여,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거나, 실용 신안이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실용성이란,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을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 법이 가리키는 종래 기술이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

**제23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디자인은 종래 디자인에 속하지 말아야 하며, 동일한 디자인이 어떤 단위 또는 개인에 의해 출원일 전에 국무원특허행정부문에 특허출원을 하고 출원일 이후에 공고된 특허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특허권을 수여받은 디자인은 종래 디자인 또는 종래 디자인의 특징의 조합과 비교하여 명확한 구별 특징을 가져야 한다. 특허권을 수여받은 디자인은 타인이 출원일 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이 가리키는 종래 디자인이란,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디자인을 가리킨다.

**제24조**

1.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a．중국정부가 주관 또는 승인한 국제전시회에서 최초로 전시한 경우,

b.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경우,

c.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25조**

1. 다음 각항에 대하여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다.

a．과학 발견;

1. 지적 활동의 규칙 및 방법;
2.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3. 동물 및 식물의 품종;
4. 원자핵 변환방법으로 획득한 물질;
5. 평면 인쇄물의 모양, 색채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서 주로 표시 기능을 하는 디자인. 상기 제(4)호에서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장 특허의 출원**

**제26조**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 설명서, 요약서 및 권리요구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서는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기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 또는 실용 신안에 대하여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필요한 때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약서는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의 기술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하여야 한다. 유전자원에 의해 완성된 발명창조에 대하여 출원인은 특허출원서류에 유전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최초의 출처를 설명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최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7조**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요약 설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제출한 관련 도면 또는 사진은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28조**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이 특허출원서류를 받은 날이 출원일이 된다. 출원서류가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우편발송의 소인일이 출원일이 된다.

**제29조**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 신안에 대하여 외국에 최초로 특허출원을 한 날부터 12월 내에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외국에 최초로 특허출원을 한 날부터 6월 내에 다시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중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약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의하거나 우선권 승인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 신안에 대하여 중국에 최초로 특허출원을 한 날부터 12월 내에 다시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국무원특허행정부문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제30조**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출원시에 서면선언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3월 내에 최초로 제출한 특허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선언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특허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31조**

하나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실용 신안에 한정하여야 한다. 하나의 총괄적 발명사상에 속하는 2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은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하나의 디자인에 한정하여야 한다. 동일 물품에 대한 2이상의 유사 디자인 또는 동일 분류에 속하며 한벌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물품에 사용되는 2이상의 디자인은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

출원인은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특허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제33조**

출원인은 특허출원서류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서류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디자인등록출원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제4장 특허출원의 심사 및 비준**

**제34조**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은 특허출원을 접수한 후 초보심사를 거쳐 이 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원일부터 만 18월이 되는 때에 이를 공개한다.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출원을 조기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일부터 3년 내에 출원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6조**

특허출원인이 실질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원일 이전에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가 외국에 출원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은 출원인에게 지정한 기간 내에 그 국가가 출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진행한 검색 자료 또는 심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또는 출원에 대하여 보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은 특허출원이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이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을 거절하여야 한다.

**제39조**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권수여결정을 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하여야 한다. 특허권은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0조**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초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수여결정 또는 디자인권수여결정을 하고, 상응하는 특허증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하여야 한다.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은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1조**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은 특허복심위원회를 둔다. 특허출원인이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의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내에 특허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을 진행하고 결정을 내린 뒤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한다. 특허출원인이 복심위원회의 복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특허권의 존속기간, 소멸 및 무효**

**제42조**

발명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고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각각 10년이며 모두 출원일부터 계산한다.

**제43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당해 연도부터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은 기간 만료 전에 소멸한다.
2. 규정에 따라 연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특허권자가 서면선언을 통하여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특허권이 기간 만료 전에 소멸한 경우에는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은 이를 등록 및 공고한다.

**제49조**

국가에 긴급상태 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의 목적을 위하여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은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강제실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50조**

공공의 건강 목적을 위하여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은 특허권을 취득한 약품에 대해 그 약품을 제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이 규정한 국가 또는 지역에 수출하도록 강제실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51조**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이 그 전에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실용 신안에 비하여 현저한 경제적 의미를 가진 중대한 기술적 진보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의 실시가 앞선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의 실시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은 후특허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앞선 발명 또는 실용 신안에 대한 강제실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전항 규정에 따라 강제실시허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은 또한 앞선 특허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후발명 또는 후실용 신안에 대한 강제실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52조**

강제실시허가와 관련된 발명창조가 반도체 기술인 경우에는 그 실시는 공공의 이익의 목적과 이 법 제48조 제(2)호가 규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제53조**

이 법의 제48조 제(2)호,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강제실시허가 외에, 강제실시허가에 따른 실시는 주로 국내 시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제54조**

이 법의 제48조 제(1)호,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실시허가를 신청한 단위 또는 개인은 증거를 제출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특허실시허가를 청구하였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허락을 받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55조**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이 내 강제실시허가에 대한 결정은 적시에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등록 및 공고하여야 한다. 강제실시허가의 부여 결정은 강제허가의 이유에 근거하여 실시의 범위와 시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강제허가의 이유가 해소되고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은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강제실시허가의 종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6조**

강제실시허가를 받은 단위 또는 개인은 독점적 실시권을 향유하지 않으며, 또한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할 권리가 없다.

**제57조**

강제실시허가를 받은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실시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실시료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실시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그 액수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쌍방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이 재정한다.

**제58조**

특허권자가 강제실시허가에 대한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권자나 강제실시허가를 얻은 단위 또는 개인이 강제실시허가 실시료에 대한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장 특허권의 보호**

**제59조**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설명서 및 도면은 청구항 내용의 해석에 이용할 수 있다.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물품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며, 요약 설명은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물품의 디자인의 해석에 이용할 수 있다.

**제60조**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특허를 실시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특허업무관리부문에 처리를 청구할 수도 있다. 특허업무관리부문이 처리하는 경우에,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침해자에게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또한 침해행위를 중지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특허업무관리부문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를 행하는 특허업무관리부문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의 배상액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61조**

특허침해분쟁이 신제품의 생산방법의 특허와 관련된 경우에는,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생산방법이 특허방법과 다르다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침해분쟁이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권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민법원 또는 특허업무관리부문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이 관련 실용 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해 검색, 분석 및 평가를 하여 작성한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특허침해분쟁을 심리, 처리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62조**

특허침해분쟁에서 침해 주장을 당한 자가 자신이 실시한 기술 또는 디자인이 종래 기술 또는 종래 디자인에 속함을 증거로써 증명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제63조**

특허를 사칭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특허업무관리부문이 시정을 명하고 이를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4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4조**

특허업무관리부문은 이미 확보한 증거에 근거하여 특허 사칭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조사처리를 행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를 심문하고 위법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위법 혐의가 있는 행위를 행한 당사자의 장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행할 수 있으며, 위법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계약서,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조사열람, 복사할 수 있으며, 위법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검사하여 특허를 사칭한 물품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것에 대하여 차압 또는 압류할 수 있다. 특허업무관리부문이 법에 따라 전항 규정에 따른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협조, 협력하여야 하며 거절,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65조**

특허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확정하고, 실제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특허의 실시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은 또한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권리자의 손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 실시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유형, 침해행위의 특성과 정도 등 요소에 근거하여 1만 위안 이상, 1백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하도록 확정할 수 있다.

**제66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장차 실시하려고 하며, 만약 적시에 제지하지 않으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중지 명령 조치를 취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재정을 행하여야 한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8시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재정한 경우에는 즉각 집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기간에는 재정에 대한 집행을 중지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이 관련 행위의 중지 명령 조치를 취한 날부터 15일 내에 신청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상기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인은 피신청인이 관련 행위의 중지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7조**

특허침해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증거가 멸실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후에는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 제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를 보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재정을 행하여야 하며, 보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재정한 경우에는 즉각 집행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 조치를 채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그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68조**

특허권 침해소송의 시효는 2년이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침해행위를 안 날 또는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특허출원이 공개된 후부터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까지 그 발명을 사용하였으나 실시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특허권자가 실시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의 시효는 2년이며, 특허권자가 타인이 그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안 날 또는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권이 수여된 날 이전에 알았거나 마땅히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수여일부터 계산한다.

**제69조**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행위로 보지 않는다.
2. 특허물품 또는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품이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은 단위, 개인에 의해 판매된 후, 그 물품을 사용, 판매 청약, 판매, 수입하는 행위.
3. 특허출원일 전에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였거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거나 또는 생산, 사용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마친 경우에 원래의 범위 내에서 계속 생산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중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임시 통과하는 외국의 운송수단에 있어서, 그 소속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약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운송수단 자체의 필요로 인해 그 장치 및 설비에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행위.
5. 과학연구와 실험을 위해서만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행위.
6. 행정심사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 의약품 또는 특허 의료기기를 생산, 사용, 수입하는 행위, 및 상기 목적을 위해서만 특허 의약품 또는 특허 의료기기를 생산, 수입하는 행위.

**제70조**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생산, 판매한 특허제품임을 모르고 생산경영 목적으로 사용, 판매 청약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1조**

이 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여 국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그 소재 단위 또는 상급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2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의 특허출원권 및 이 법이 규정한 기타 권익을 침탈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 단위 또는 상급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제73조**

특허업무관리부문은 특허제품을 사회에 추천하는 등의 경영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특허업무관리부문이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하고 영향을 해소할 것을 명령하고, 위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정도가 엄중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을 지닌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제74조**

특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직원 및 기타 관련 국가기관 직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부정을 행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제8장 부칙**

**제75조**

국무원특허행정부문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기타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

이 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